



제14-0451호

안 전 인 증 서

(주)한선엔지니어링

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76(달동)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자외선/적외선식 불꽃감지기(UV/IR)

형식 · 모델 / 용량 · 등급 / 인증번호

형식·모델	용량 · 등급	인증번호
UI-11-01	DC 24V	14-GA2BO-0451
	Ex d IIC T6	

인 증 기 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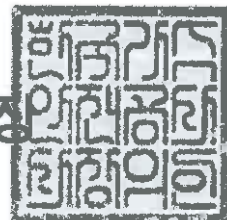
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13-54호)

인 증 조 건

-20 ℃ ≤ Tamb ≤ +40 ℃, 뒷면 사용조건 참조

2014 년 11 월 04 일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





인 증 조 건

1. 제조공장:

“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76(달동), (주)한선엔지니어링”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제품에 한함

2. 제품개요

본 제품은 내압방폭구조의 적외선식 불꽃감지기로서 BODY 등의 재질은 CAST ALUMINUM ALLOY로 되어있고, 접합면은 Spigot Joint로 되어있으며 1종 및 2종 위험장소에 설치할 수 있음.

3. 인증범위:

UI-11-01(DC 24V), IP66

4.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

- ① $-20\text{ }^{\circ}\text{C} \leq T_{\text{amb}} \leq +40\text{ }^{\circ}\text{C}$
- ② 제품 출고 시 확인시험 실시 대상(Body에 10.2bar 압력)
- ③ 불꽃감지기 설치 시 사용설명서 참고

5. 인증(변경)사항

6. 그 밖의 사항

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, 확인심사 수검,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준수



제14-0450호

안 전 인 증 서

(주)한선엔지니어링

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76(달동)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자외선/적외선식 불꽃감지기(UV/IR)

형식 · 모델 / 용량 · 등급 / 인증번호

형식·모델	용량 · 등급	인증번호
UI-11-01	DC 24V	14-GA2BO-0450
	Ex tD A21 T100 IP66	

인 증 기 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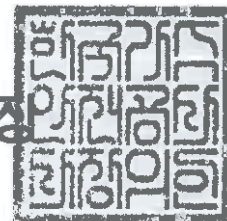
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13-54호)

인 증 조 건

-20 ℃ ≤ Tamb ≤ +40 ℃, 뒷면 사용조건 참조

2014 년 11 월 04 일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





인 증 조 건

1. 제조공장:

“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76(달동), (주)한선엔지니어링”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제품에 한함

2. 제품개요

본 제품은 분진방폭구조의 자외선/적외선식 불꽃감지기로서 BODY 등의 재질은 CAST ALUMINUM ALLOY로 되어있으며, 폭발성 가스분위기 및 분진위험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 있음

3. 인증범위:

UI-11-01(DC 24V), IP66

4.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

- ① $-20\text{ }^{\circ}\text{C} \leq T_{amb} \leq +40\text{ }^{\circ}\text{C}$
- ② 불꽃감지기 설치 시 사용설명서 참고

5. 인증(변경)사항

6. 그 밖의 사항

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, 확인심사 수검,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준수
